##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68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 박덕흠 · 엄태영 · 서천호

고동진 · 김예지 · 김정재

이종배 · 강승규 · 구자근

김장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0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제50조의4(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른 사람 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개 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 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 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 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 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 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
	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 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신 설>	제160조(과태료) ①

	<u>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u>	
	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	
	<u>장치 대여사업자</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